

실종수사 : 국내 · 외 아동납치성살해범의 M.O. 특성

고 선 영[†]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중 최근에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되는 범죄자의 행동차이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범죄 수사단계에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만이 발생하는 아동의 실종(납치) 발생 시 범행현장의 행동근거로 유추하는 프로파일링 수사기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성범죄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 살해하는 범죄자의 범행 특성이 한 범죄자가 범행한 것과 같이 동일한 범행수법을 보인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는 아동납치성살해범 수사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의 아동납치성살해범의 범행특성과의 비교를 위해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사례 수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의 주된 목적이 아동성범죄임에 착안, 13세미만 아동성범죄의 M.O.를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국 범죄자처럼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도 범행 초기, 중, 후의 범행수법이 대부분 유사했다. 즉,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는 범인과의 인식관계가 없는 우연적으로 만난 평범한 아이들이었으며 환심을 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조우하였다. 또한 과도한 구속과 통제가 필요없는 아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 즉시 과도한 폭력으로 아동을 구속하였고, 납치의 가장 주된 목적은 성적 원인이었다. 하지만, 살인까지 일련의 시나리오처럼 연결된다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범죄자에게 있어 살인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이뤄졌다. 범행 후 사체는 대부분 토막, 유기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존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사체 발견시점이며 그로 인한 범인검거는 평균 3일을 넘지 않았다. 반면,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아동선택방법을 제외한 조우방법, 범행 중, 후, 각각에서 아동납치성살해범과의 유사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범죄 아동실종(특히, 성적 납치)의 수사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는 지역민의 협조를 얻어내어 납치 초기시점의 저인망식 수색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개시점의 단축, 마지막으로 지역 내 시민공동체의 활성화이다. 부수적으로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 사례를 통한 범죄예방을 제안하자면, 사법부에서는 이런 경우 지능이나 사회성 검사 등을 범죄자정보에 필수화시키고 이들을 위한 지역 내 정서지원,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범죄예방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과 사회학, 범죄학자들의 조력을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찰수사력의 향상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외국의 실종, 아동 납치수사와 관련된 많은 자료는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수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실종수사에도 지역 내 개개인이 함께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많은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해 아동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과 납치를 변별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아동납치성살해, 13세미만 아동 성범죄, M.O., 평범한 아이들, 저인망식 수색형태, 납치사건의 의미적 수사주체

[†] 교신저자 : 고선영,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E-mail : mapia74@hanmail.net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2000~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피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중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은 2004년까지 주춤하다가 2005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 피해는 전반적인 인격형성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에 관해서는 범죄의 개념, 범죄자의 특성 및 치료와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Nolan, O'flaherty, Turner, Keary, Fitzpatrick, & Carr, 2002; Bouvier, 1999; Hall & Hall, 2007a). 범죄자의 임상적 특징은 교정 및 교화를 위한 치료나 재활 시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알 수 없는 범인을 특정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실제적인 단서가 필요한 수사 단계에서의 활용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물론 수사단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에서는 범행현장에 드러난 범죄자의 성격과 동기를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의 연구도 이루어져 왔으나, 이 또한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기 보다는 수사관이나 심리학자의 경험에 의존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Baumgartner, Ferrari, & Palermo, 2008). 따라서 최근에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범죄자의 행동차이를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Canter, & Heritage, 1989; Kocsis, Irwin, & Hayes, 1998; Kocsis, & Cooksey, 2002). 범죄자의 현장행동을 중심으로 한 유형분류 연구는 국내에도 진행되고 있으며(김지선, 박지선, & 최수형, 2009; 김경옥, 2009; 고선영, 김경옥, 정연대, 최대호, 2010), 이는 범죄 수사단계에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현장에 대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만이 발생하는 실종상황의 경우, 특히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 실종의 경우 범죄 현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특성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경찰청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발족(2008)으로 아동·부녀자 미제 실종사건을 전면 재분석하고 단순 가출사건과 범죄피해 의심사건을 분류,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은 재수사를 착수하고 미해제 사건을 일괄 정리 후 원점에서 재수사하라는 방침으로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제 실종사건을 재분석하고 단순사건과 범죄피해 의심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납치를 하는 범죄자의 특성조차도 실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실종사건(특히 범죄 의심되는 아동실종사건) 시, 수사의 어려움은 물론 수사기간 내내 경찰은 여전히 비난의 표적이 된다. 또한 실종자 수사를 위한 전문적인 대책이라는 명패로 만들어진 팀의 운영은 아동들에 대한 잔혹한 범행을 차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실종전문 수사팀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실종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할 때에야 비로소 전문 수사팀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아동범죄에 대한 연구는 어떤 것이든 필요한 연구주제이나, 다른 납치상황과는 동기나 행동적인 면에서 독특하게 구분되고, 피해자의 생명위험이 높은 성범죄 목적 아동납치범죄자의 특성 연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범죄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된 아동납치성살해범과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 13세미만아동성범

죄자의 특성비교를 통해 아동납치성살해 실종 사건의 수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

아동 관련 개념을 살펴보면, 국제법상 성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연령 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연령 특히 20세 미만, 18세 미만, 13세 미만 혹은 6세 미만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정현옥, 2008). 이와 같이 아동의 개념은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정의는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아동의 개념 차이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만18세 미만,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명희, 2007).

흔히 아동대상 성범죄는 아동 성추행(Child sex abuse; Child molester)과 소아기호증(Pedophile)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어의적인 측면에서 성추행은 성범죄의 일부로 강간보다 경미한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아동 성추행의 행동에 성교(vaginal or anal intercourse)를 포함하는 학자도 있기 때문에(Conte, 1986), 그 둘을 범행의 심각성 차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반면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 의하면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선호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춘기 이전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아이들과 성적인 행위에 참가하는 행위 혹은 환상이라고 정의된다(Holmes & Holmes, 1996; Hall & Hall, 2007b). 1960년대, 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 아동 성학대 발생 실태에 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21개국 성인 대상의 소아기 성학대 조사결과, 여성의 7%~36%, 남성의 3%~29%까지 아동기의 성학대 경험을 보고했으며, 거의 모든 조사에서 여성피해자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내지 3배 높았다. 미국의 경우 18세 이전에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성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여성인구의 37%이며, 본인의 가족에게 성학대를 받은 사람도 21%였다고 보고하였다(Finkelhor, 1994). Bouvier(1999)에 의하면, 실제로 소아기호증에 의한 범죄를 포함한 아동대상 성범죄의 피해 아동의 연령은 6~11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있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점 중 하나는 아동대상 성범죄자 대부분이 소아기호증 환자라는 신념이다. 이런 성향때문에 유사전과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 동종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4.7%에 불과하며,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도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연대, 2009). 유형분류 기준이 연구자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특성별 유형 분류는 치료 혹은 교정방법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강은영, 2003). 기존의 범죄 동기나 범죄자 유형 연구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국내 성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외 범죄 수사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아동대상 성 범죄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호자 혹은 수사관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조우하고 성폭행,

살해, 사체가 유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에 있겠지만, 범행이 일어나는 동안 피해자의 보호자나 수사관에게 있어 아동은 단순히 실종된 상태라는 것이다.

아동의 납치·유괴·실종

납치·유괴 및 실종에 관한 광범위한 개관 연구가 국내에도 이루어졌으나(최인섭, 1996, 이동진 & 김성언, 2003), 이들 연구에서는 연령 및 범행 목적 등 매우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는 납치·유괴나 실종의 개념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적 접근을 통한 실종연구 및 DNA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개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납치 및 유괴 등에 관한 법적·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범행자가 범행당시 지녔던 유괴목적에 의해 아동납치범죄를 구분한 최인섭(1996)에 따르면, 아동 납치범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부모 소개 파악이나 빗 독촉, 가족의 협박수단이나 아동의 몸값 요구, 그 밖의 영리목적에 의해 아동을 납치한다. 그 중 양육(15.2%)이나 성욕구 충족(15.2%)을 위한 납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근거로 분류한 어린이 유괴범죄의 목적도 양육형, 몸값 요구형, 협박 이용형, 불분명한 목적, 영리목적 및 성적 욕구 충족형 등 총 6가지로 구분된다(최영신, 2007). 이렇듯 납치, 실종과 관련된 분야는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연구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외국에서는 범죄자의 동기나 피해자 활용을 통한 납치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분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Miron and Goldstein, 1978; June, 1999).

일반적으로 실종자의 대부분은 자진 귀가하거나 보호소 등에 의해 소재파악이 되는 등 범죄관련 실종은 전체 실종 사건의 2%에도 못 미치고, 설사 범죄관련 실종이라 할지라도 최초 실종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종 아동으로 신고된다. 하지만 두 시간 이상 지연된 실종 신고로 인한 피해자 발견 불가(60%), 납치 살해된 아동의 대부분(74%)이 납치 3시간 이내에 죽는다(Kenneth, Rober, & Joseph, 1997)는 경험적인 결과는 빠른 수사개시의 중요성을 반증해 준다. 그만큼 아동의 실종이나 가출 신고 시, 부정적인 초기징후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종 아동이 단순히 늦는 것인지 납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시점이 바로 수사관들을 어렵게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의 실종접수가 되는 초기단계가 수사관이 매우 정확하고 비판적인 요인들로 수사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외국의 실종아동살인수사 매뉴얼에서 강조하고 있다(Kenneth et al., 1997). 또한 캐나다와 미국 등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2000)은 물론, 민간인에게도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eterson, & Peterson, 1993; Robert, 2004).

비면식범에 의한 납치라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은 매우 드물기¹⁾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설사 자신의 아동이 납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납치만 되었지 성범죄를 당했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 그나마 수사를 위해 다행인 것은 아동납치성살해의 경우 범죄자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아닌, 범죄자의 2/3(67%)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납치, 살해된 것과 같은 유사한 M.O.를 지닌다(Kenneth

1) 0.5%미만; 실종아동 10,000명 당 1명 정도

et al., 1997)는 접이다.

범행수법(Modus Operandi)

범행수법(Modus operandi)은 사전적으로 절차, 작업 방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의 M.O.는 범죄자의 범행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행수법이라고 해석된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남기는 두 가지 심리적 단서 즉, 범행수법(M.O.)과 인증(Signature)은 FBI의 이분법적 유형론에서 범죄현장 분석 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Holmes & Holmes, 1996). 범행수법은 수사관이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범죄분석 및 다른 사건간의 관련성 분석 등을 하게 된다. 범행수법은 학습된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범죄자가 보이는 범죄자만의 독특한 행동양식이다. 범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행수법을 개발하고, 범죄 경력이 쌓이면서 자신의 범행수법을 수정하여 재형성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인증은 일정하고 영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때로 인증도 범죄자가 범죄를 계속 저지름에 따라 진화되기도 하며, 범죄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Holmes & Holmes, 1996). 즉, 범행수법은 범죄가 저질러진 방식 혹은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의미하고, 대조적으로 인증은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일관되게 표출되는 행동을 의미하지만,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범죄자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동은 아니다(Mott, 1999). 서로 다른 범인이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으므로, 완전히 똑같은 사건 현장 역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신감

정 테스트가 정신병리를 반영하는 것처럼, 범행현장은 병리학적인 범인의 성격, 특성을 반영한다(Holmes & Holmes, 2002).

외국의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특성.

외국에서도 성범죄 목적 아동 납치 살해범의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특성 정리는 Kenneth 등(1997)이 성범죄 목적으로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후 살해, 유기한 범죄자와의 면담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M.O.(Modus Operandi). 이 범죄자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아이를 강간한다는 점에서 다른 아동 강간범과의 유사점을 찾아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아동 강간범과는 달리 아이의 살해 및 강간 방법 등 범행행위에서 아동납치성살해범은 대부분 서로 유사하게 범행한다. 특히 초기 행동의 유사성이 높는데(70%), 예를 들면, 피해자 선호, 범죄자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 반영으로 피해자 유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납치 초기과정에서 무기나 범행도구를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칼이 있다는 위협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속이거나 유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아동 성범죄자 및 다른 살인범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범행 초기

범죄 피해자 특성. 피해자는 전형적인 삶과 가족 내의 위험성이 낮은 “평범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가족과 관련되어 발생(9%)하기도 하지만, 아동 납치성살해 피해자 중 대부분(76%)은 평균 11

표 1. 살인범이 피해자를 고르는 방법

우연히 조우한 피해자	이전에 면식이 있던 피해자	물리적인(외부적) 특성	특별한 동기
57%	15%	14%	13%

(Kenneth, Rober, & Joseph, 1997)

살 이상의 여자 아이들이다. 또한, 피해자의 물리적 특성(예, 피해자가 긴 금발머리거나 짧은 치마를 입는 등) 때문에 선택된 피해자들은 단지 14%뿐이고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서 선택한 것도 15%정도이며, 대부분(57%)은 완전히 모르거나 일면식 정도인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표 1). 즉,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길을 가거나 가게에 들어갔다가 범인과 우연히 조우한, 기회에 의해 선택된 피해자들이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조우. 사례 중 80%에서 피해자와 범인의 초기 조우는 피해자 거주지의 1/4마일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공통적으로 피해자와 합리적 방법(납득할만한 자연스러운)으로 접촉(66%)하게 된다. 범행대상이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유혹하기 쉽다는 취약함(사례 중 16%)과 속임수(19%)로 아이들을 손에 넣는다. 예를 들어 내 강아지 좀 봐 달라거나 도와 달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거나 자신의 통제 하에 두게 된다. 이러한 속임수는 성인보다 훨씬 더 잘 통하기 때문에, 범죄자는 피해자와의 최초 조우과정에서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굳이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물론 드물게 납치 가능한 아들과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인범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살해를 위해 일시적인 약탈을 하는 만성적인 사냥꾼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

즉, 그들은 다른 아동납치성살해범과 같은 행동(합리적인 유인)을 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물리력(62%)과 또 다른 폭력(3%)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게 된다.

범행 중

피해자의 통제 및 구속. 피해자를 구속(속박)한다는 것은 범죄 상황에서 통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특히 위협조적이고 강인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 피해자인 경우 속박의 통제적 기능이 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납치성살해범들의 피해자 구속은 다른 살인범들보다 6~12배²⁾에 달한다. 구속은 통제뿐만 아니라 성적인 요소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피해자 구속은 상황의 통제적인 요소보다는 강력한 성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적 동기. 살인에 대한 최초 동기에서 다른 살인범(모든 살인범의 5%, 다른 아동살인범의 14%)과는 달리 아동납치성살해의 대다수(69%)는 성적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살인의 동기가 성적인 요소라는 점은 연쇄살인자들과 공유되는 특성이다. 즉, 아동납치성살해범의 거의 반 수(48%)는 강간범으로 분류되고, 21%가 다른 성폭력범죄자로 분류된다. 또한 다른

2) 다른 아동살인범의 피해자 속박 : 2%정도, 모든 살인범의 피해자 속박 : 4%

피살자(모든 피살자의 7%, 모든 아동피살자의 15%)와는 달리 아동납치성살해 피해자 대다수(64%)에게서 드러나는 물리적인 성폭행 증거는 이들이 성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반면, 아동납치성살해범이 성범죄자나 욕정에 의해 살인하는 자(연쇄살인)과 구분되는 특성 중 하나는 포르노그래피의 기능이다. 성범죄자나 욕정에 의한 살인자의 동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포르노그래피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연쇄살인범과는 달리, 아동납치성살해범의 성적동기화에 있어 포르노그래피의 역할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포르노그래피가 살인 동기화나 초기화의 trigger로 사용된다는 증거나 징후는 단지 4%에 불과하다.

살인의 동기. 일반적으로 특정 동기(원한, 복수, 우발 등)에 의한 살인범의 경우, 요소들 중 어떤 하나가 부재할 경우 살인의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나 아동납치성살해범은 전형적인 특별한 이유(또는 동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자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 동기화된 범죄자(소위, 기회범죄자)이며, 피해자 역시 단순히 기회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아동납치성살해범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경향성(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는)을 표출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지, 특별한 동기(원한, 복수, 우발 등)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피해자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질(12%), 고용(14%)이나 경제적 문제(17%) 등 살인을 동기화하는 촉진적 위기로 작용되는 개인적 문제가 일부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동기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갈등(사례 중 45%)이나 범죄적·법적

문제(36%)를 겪은 뒤의 성격적인 면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쉽게 통제 가능한 아동을 과도하게 구속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경향성은 범죄자 심층의 심리적인 결함요소에 의한 것이지 실직, 물질 및 포르노그래피에의 노출, 공개수사 등 외적인 동기화 과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행 후

사체 처리. 살해된 후 사체의 52%는 발견이 어렵게 위장되어져 있고, 단지 9%정도가 발견 가능하게 처리된다. 따라서 피해자 수색시, 수색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인지해서 나뭇가지, 바닥, 쓰레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사실상 시체들은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키와 대략 동등한 간격을 두고 수색해야 한다.

범행 후 행동. 살인 후 사체를 배치시키고, 체포 전의 전주곡과 같이 살인범들은 살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런 아동납치성살해범들의 21%는 살인 후 즉시 마을을 떠나거나 누군가에게 범행을 고백(18%)하는 등 보편적으로 6가지 행동을 행하게 되며, 소수이기는 하나 추적하는 수사관들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범행 후 행동에서 범행 초기와 범행 중과 같이 전형적으로 두드러진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납치사건 발생 시 초기의 수사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범죄자 유형

연령 및 거주형태. 아동납치살인범의 평균 나이는 27세 가량으로, 피해자 거주지 주변에

표 2. 아동납치살인범의 아동상대 이전 전과

성폭행(강간제외)	강간(또는 미수)	살인(또는 미수)	납치	폭행
45%	31%	28%	19%	15%

(Kenneth, Rober, & Joseph, 1997)

거주(29%)한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85%), 혼자 거주(17%)하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34%)한다. 이들 중 반은 무직이고, 고용되었더라도 특별한 기술이 없거나 비숙련공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주변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과. 이들의 대다수가 광범위한 전과력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의 동기화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범죄나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최초 전과는, 폭력(61%)과 아동 관련 범죄(53%)이며, 그중 아동 관련 전과자들의 초기 범죄는 강간(범죄자 중 31%) 및 다른 성추행(범죄자 중 45%)이 대부분이다(표 2).

지금까지 면접을 통한 외국 아동납치성살해범의 M.O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결과에서와 같이, 아동납치성살해범이 그들만의 M.O. 특성을 지녔다면, 국내의 아동납치성살해범도 유사한 M.O. 특성을 보일 것이며, 반면 단순한 아동성범죄자와는 다른 M.O. 특성을 보일 것이다. 이런 결과가 국내 범죄자에게도 나타나는지 사례검토를 통해 비교해보고자 한다.

방 법

분석대상 및 방법

납치 미수 혹은 미신고된 암수 범죄도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발생하여 해결(범인검거)한

납치 후 성폭행(강간)한 뒤 살해(미수)까지 이루어진 아동납치성살해 사건은 총 7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단계로 사례검토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외국과 동일한 사례(납치-성-살해)의 M.O.를 검토했으며, 두 번째로는 경찰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에 D/B화된 13세미만아동성범죄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납치성살해범 자료의 양적 분석이 어려우므로 7건의 사건개요와 M.O. 빈도를 분석하였다. 13세미만아동성범죄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 SCAS에 D/B화된 총 463건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중 면식자 성범죄가 사례의 37%(N=17)를, 그중 가족(동거 내연남 포함)에 의한 지속적인 성범죄가 19.6%(N=9)를 차지하여 본 논문의 주제와는 이질적인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총 37건의 13세미만아동성범죄 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국내 아동납치성살해 범죄의 사건개요⁴⁾

서울 000동 가00(여, 4세) 납치, 강간살인, 토막, 사체 유기

2001.5.10.18:00경 뚝방에서 혼자 뛰어 놀던

3) 총 48건 중 2건은 살인미수로, 1단계 분석에 포함된 자료로 제외시킴.

4) 피해자 성명은 가, 나, 다 순의 가명으로 표기한다.

가00(여, 4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범인의 주거지로 납치하여 강간살인 후 토막,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피해자 실종 30분 후에 실종신고가 되었으나 사체발견(실종 9일 후)시까지의 단순 미귀가자로 분류되어 일상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는 사망하고 납치 19일 만에 범인이 검거되었다.

서울 △△동 나00(여, 10세) 납치, 성추행, 살해, 사체 유기

2006.2.17.19:10경 비디오를 반납하고 나오는 나00(여, 10세)에게 ‘신발을 공짜로 준다’면서 범인의 신발가게로 유인하여 셔티문을 내린 후 폭행 및 성추행하고 살해하였다. 우연히 범인의 가게를 방문한 아들이 피해상황을 발견하고, 범인 아들의 차로 경기도 소재 인적이 드문 공장으로 사체를 이동하여 방화한 뒤 유기하였다. 피해자 실종 3시간 만에 실종신고가 되었으며, 신고 즉시 납치사건으로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 발생 19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으나, 너무 빨리(10분 이내) 피해자가 살해되어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였다.

제주 XX동 다00(여, 10세) 납치, 강간, 사체 유기

2007.3.16.17:00경 피아노 학원버스에서 내리는 다00(여, 10세)에게 ‘내가 글을 모르니 대신 글을 좀 써 달라’며 범인이 거주하는 과수원 내 건물로 유인하여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천으로 감은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과수원 담벼락에 유기하였다. 피해자 실종 즉시 신고 되었으나, 최초 수사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다가 실종 40일만에 발견된 사체에서 성추행의 흔적이 발견되어 성범죄 전

과자에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범인을 검거한 뒤 범행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경기 ☆☆동 라00(여, 10세)·마00(여, 8세) 납치, 강간, 토막, 사체유기

2008.12.25.17:00경 담배를 사러가다가 우연히 골목길에서 라00(여, 10세)와 마00(여, 8세)를 보고 ‘과자를 사준다’고 아이들의 환심을 사 피해자들을 범인의 주거지로 납치하여 강간 후 살해하였다. 사체처리를 고심하던 중 사체를 토막 낸 후 승용차를 대여하여 라00(여, 10세)는 경기도 인근 야산에 묻고, 마00(여, 8세)는 하천에 투기하였다. 피해자 실종 7시간 만에 신고되어 신고 즉시 주변 탐문과 일제 수색 및 공개수사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라00(여, 10세)의 사체가 발견(실종 76일)되면서 성범죄 전과자에 수사력이 집중되었다.

경기 □□동 바00(여, 8세) 납치, 강간, 살인미수

2008.12.11.08:30경 XX교회 앞을 지나 등교 중인 바00(여, 8세)에게 ‘너 이교회 다니냐’며 말을 붙인 뒤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를 XX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머리를 박고 폭행하여 기절시켜 강간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내장기관을 소훼하고 범행 장소에 물을 뿌려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하였다. 09:30경(사건발생 1시간 후) 피해자가 살아나서 직접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고, 즉시 수사 착수하여 현장의 유류지문을 확보하여 범인 특정, 사건발생 2일 만에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범인을 검거하였다.

부산 ◇◇동 사00(여, 13세) 납치, 강간, 사체 유기

2010.2.24.19:07경 사00(여, 13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인이 피해자를 근처 무당집으로 끌고 가 강간 및 살해한 뒤 근처 물탱크에 유기하였다. 피해자 실종 4시간 만에 신고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사건발생 12일 만에 사체가 발견되었고, 발견된 사체에서 나온 DNA로 범인 특정하여 사건발생 16일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서울 ▽▽동 아00(여, 8세) 납치, 강간, 피해자 도주

2010.6.7.10:00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기위해 기다리던 아00(여, 8세)의 목에 커터 칼을 들이대며 한 손은 피해자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 목에 두른 채 범인의 주거지로 납치, 강간하였다. 강간 후 범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가 도망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해자 실종 3시간 30분 후에 실종신고가 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범인과의 교우장소인 교내 CCTV에 촬영된 범인 복장으로 주변 탐문 중 발생 9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결 과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죄자 M.O.

범행 초기

범죄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0.1세이지만 주로 8~10세 아동이 대부분(75%)이었다. 발생한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와 면식관계에 있는 범인은 단 한 건(일면식)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회가 닿아 우연적으로 납치된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조우. 모든 사례에서 범인과 피해자의 최초 조우는 피해자 거주지 100m이내였고, 100m를 넘는 사례도 120m 이내로 외국의 사례(1/4마일 이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그림 1). 범행시간은 시간대의 특이점보다는 피해자가 혼자되는 시간(목격자 없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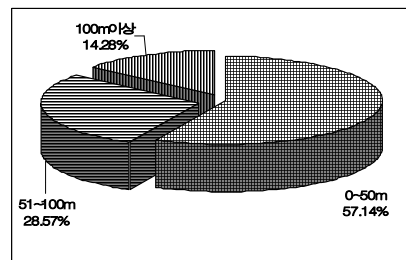


그림 1. 피해자-가해자 조우거리

표 3. 피해자-가해자 조우 방법

방 법	비 율
환심사는 방법	42.9%
도움요청 방법	14.3%
관심갖는 방법	14.3%
약탈적인 방법	28.5%

조우 방법 역시, 환심을 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관심을 갖는 질문 등이 주를 이루고(71.5%) 약탈자형의 납치(28.5)도 함께 행해졌다(표 3). 납치장소에서 범행 장소까지의 거리는 대다수(71.43%)가 50m이내였고, 범행장소는 주로 범인의 거주지⁵⁾(71.43%)나 근무지

5) 사례 6은 재개발지역인 공가를 배회하는 주거부

(14.28%)로 대다수(85.71%)가 범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은신처 내에서 이루어졌다.

범행 중

피해자의 통제 및 구속. 모든 사례에서 납치 후 과도한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 및 통제하였고, 시기는 납치가 이루어진 직후, 즉시 이뤄졌다. 대부분 안면부 폭행 혹은 질식을 통해 피해자를 기절시켜 저항을 못하도록 구속하였다. 이 역시 모든 사례에서 피해자를 범인의 은신처나 통제가 가능한 장소로 유인해 온 뒤에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적 동기. 대부분 범인들이 감형을 위해 성적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모든 피해자에게서 성폭행 흔적(질 혹은 항문 파열 등)과 범인 정액이 발견되는 등 범인의 성범죄가 법의학적 증거로 설명된다. 또한 소수(28.57%)만이 범행 전 포르노그래피와의 접촉⁶⁾을 하였고, 대다수는 포르노그래피는 커녕 음란물과의 접촉 기회도 드문 범죄자들이었다. 달리 말해, 이들은 평소 성적으로 각성·동기화 되어있던 자가 우연한 기회에 접촉한 ‘평범한 아이들’을 자신의 은신처로 납치하여 성폭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외적인 동기화(포르노, 실직, 상실, 공개수사 등)에 의해 성범죄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살인 동기. 성적동기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동기를 질문할 때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을 이

정 상태, 그 중 하나에서 범행하였으므로 거주지에 포함시킴.

6) 이 사건 범죄자들은 성인 강간도 함께 범행하는 자들이었음.

유로 진술을 회피(57.14%)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모든 범죄자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심지어 본드를 흡입한 후 범행한 경우도 있으나 추후 진술 및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모두가 살해를 포함한 자신의 범행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성폭행까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이뤄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범행(성폭행)을 저질렀더라. 그리고 성범죄를 뒷수습을 하기 위해 살인을 했다며 마치 같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본 연구 사례는 범인의 진술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국내 사례에서의 살인 과정은 어느 정도 계산된 행동이라고 진술하는 등 성적 연상선상에서 살해한다는 외국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범행 후

아동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수사개시가 늦어진 가00 사건 이후 발생한 아동납치사건의 경우 실종신고부터 검거까지의 시기는 전반적으로 단축되었고, 여기서 매우 큰 변수로 작용되는 것은 피해자 발견(생존이든 사망이든)이다(그림 2). 따라서 아동납치성살해사건에서 피해자 수색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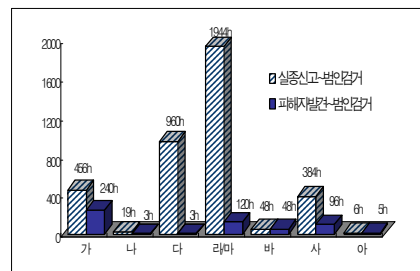


그림 2. 피해자 발견 및 범인검거까지의 시간

표 4. 사체 처리 방식

내 용	토막, 봉투에 담아 유기	현장 방치	피해자 도주	박스에 담은 후 유기, 방화
비 율	57.14%	14.28%	14.28%	1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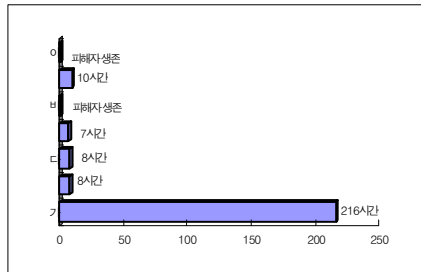


그림 3. 살해 후 사체유기까지의 시간

사체 처리.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발견되면 안 된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 하에 살인했고, 따라서 범인들은 사체처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뒤 완전범행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림 3). 사례의 상당수(57.14%)는 살해된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 외출하여 도구(뿔, 갈, 쓰레기봉투 등)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토막, 묶어서 봉투에 담아 유기하는 방식으로 사체발견을 지연시키는 데 노력을 들인다(표 4).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범행 장소와 사체유기장소간 거리는 대다수(60%)가 0.5km 미만이며, 차량사용의 용이성이 사체를 장거리에 유기할 수 있는 매개로 작용되었다.

범행 후 행동. 범행 후 며칠간 거주지를 떠나 여관 등지를 배회한 사례(14.28%)도 있으나 멀리 떠나거나 종적을 감춘 사례는 없었고, 대다수가 차량 대여, 쓰레기봉투 구입 등의 준비작업(그중 75%)과 사체 유기가 끝나면

7) 사례 6의 경우, 본건 전에 수배상태였음.

다시 일상의 삶(사례의 80%)을 살고 있었다.

범죄자 유형

연령 및 거주형태. 평균연령은 45.14세로 외국의 경우보다 높지만, 이는 분산이 흩어진 상태로 주 범죄 연령은 30대와 50대로 양분되어 나타난다(그림 4). 대다수가 독거형태로 거주(71.43%)하고, 가족과 거주(28.57%)하는 경우에도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는 않는 가족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일용직이나 무직이 사례의 대부분(71.43%)이고, 직업이 있더라도 장사가 안 되는 신발가게나 대리운전 등 사회주변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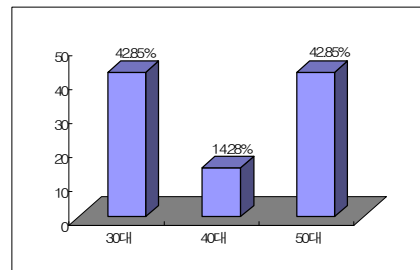


그림 4. 범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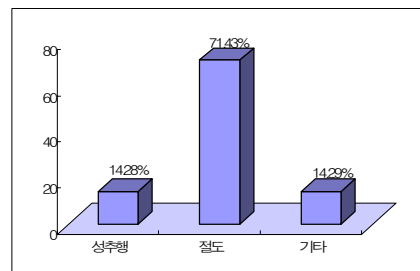


그림 5. 범죄자의 초범 종류

전과. 이들 대다수는 다양한 전과력을 지니고 있으며 성범죄관련 전과를 지닌 경우가 사례의 85.71%를 이룬다. 초범이 아동관련 성추행인 사례(14.28%)도 있지만, 국내사례의 대부분(71.43%)은 절도로 초범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외국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그림 5). 하지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인 등 본 사건과 유사한 전과를 지닌 경우가 사례의 42.86%나 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성범죄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과이다.

이밖에 국내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범행당시의 알코올과 범죄자의 진술패턴이다. 즉, 모든 범죄자는 범행 전 과도하게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중독 수준)과 함께, 피해아동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28.57%),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기(42.86%) 때문에 죽었다고 진술하는 등 살해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를 볼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납치성범죄 M.O.

범행 초기

범죄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9.62(SD=2.20)세였으며, 그중 범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78.4%(그림 6)로 외국의

연구 및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경우 성인 여성이나 동년배보다 쉬워서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범죄자와 피해자 조우. 피해자의 최초 조우장소는 노상(35.1%)이 가장 많았다(그림 7). 하지만 노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마지막 행동(그림 8)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생활반경 내 노상으로 재분류할 경우 훨씬 더 많은 피해자(59.4%)가 집, 학교, 교회, 놀이터 등을 오고가는 도중 범인과 만나게 됨을 알 수 있다. 범행 시간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13:00~18:0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등·하교 등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서 발생하였다. 외국 및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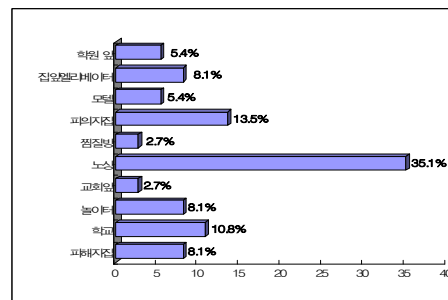


그림 7. 피해자와 범죄자 조우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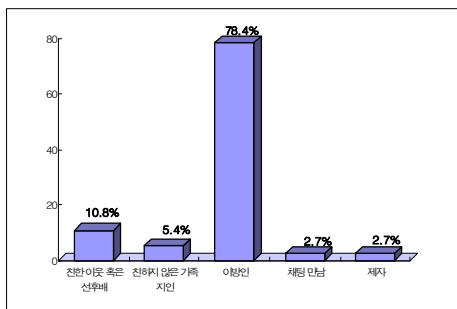


그림 6.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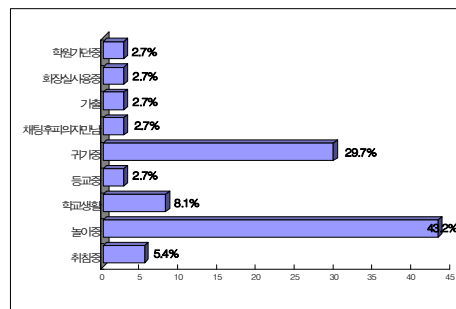


그림 8. 피해자의 마지막행동

아동납치성살해범과 유사하게 유혹, 속임수나 도움요청, 무의미한 질문으로 아동과 조우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으나(51.3%), 13세미만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아동납치성살해범들과는 달리 범행 노출이 쉬운 미숙한 방법(위협이나 물리적 납치)으로 피해자와 조우하는 경우도 상당수(32.4%) 되었다.

범행장소. 피해자 조우 즉시 이동없이 그 자리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7.8%), 피의자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경우(18.9%)도 있으나, 대다수는 골목이나 노상(공중화장실 포함) 등 범행 노출이 가능한 개방형 장소에서 이뤄졌다. 즉, 13세미만아동성범죄의 상당수(59.4%)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납치하는 국내·외 아동납치성살해범과는 달리 우연적이고 찰나적 범행특성을 보이고 있다.

범행 중

피해자의 통제 및 구속. 국내·외 아동납치성살해범의 사례들과 달리 13세미만아동성범죄에서는 범행 중에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등의 폭언, 언어적 위협이나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응징이나 처벌적 언급(62.2%) 만을 사용하고, 실제 물리적 폭력(그림 9)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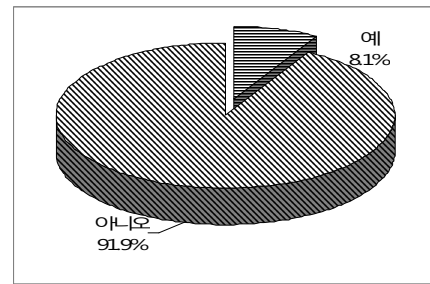


그림 10. 흥기사용

흥기(그림 10) 사용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구속하는 경향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성적 동기. 범인들의 성적 시도는 범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81.1%), 만지게 하거나(64.9%), 빨게 하거나(45.9%),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40.5%)는 등의 강제추행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기삽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발기부전 등으로 사정을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56.7%)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료적 치료행위를 요하는 심각한 정도의 상해도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그림 11). 이는 성적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심각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는 국내·외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특성과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범행 전 포르노그라피와의 접촉 여부는 SCAS 변인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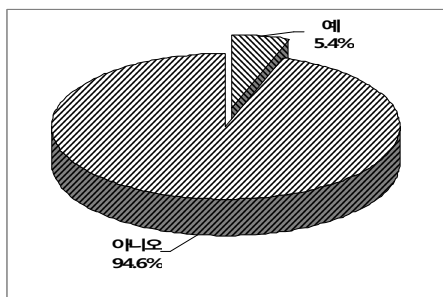


그림 9. 물리적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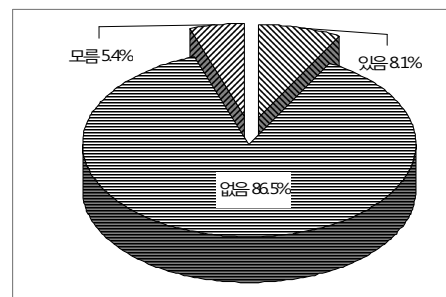


그림 11. 의료행위 요하는 상해

확인하기 어렵다. 13세미만 아동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범행의 종료이므로 살인동기의 분석은 알 수가 없다.

범행 후

13세미만아동 성폭행 후 범인의 행동은 다분히 일상적인 삶의 연속이다. 범행 후 도주 장소도 피의자의 집(75.7%)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며, 범행의 대다수가 범인이 자발적으로 종료하거나, 하나의 범행 후 또 다른 범행을 위해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인근에서 검거되거나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등 범행 후 행동의 특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아동납치성살해범의 경우도 사체 유기 후에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체 유기 시까지는 정서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3세미만아동 성범죄의 몇몇 사례에서 일상의 삶에도 다소의 기분 부전상태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면담자의 평가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경우 범행과 일상에서의 긴장감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 유형

연령 및 거주형태. 범인의 평균연령은 39.19세(SD=14.32)이고, 독거의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부모와 함께 거주(43.2%)하고 있으며, 무직 혹은 막노동(48.6%)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경험을 보고하는 경우는 적고 대다수가 방임형(65.7%)으로 양육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본범내용 및 피해상황 등을 검토해본 결과, 범인들의 상당수가 진단받지 못한 지능지체 혹은 지적, 사회적 기능저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3세미만아동성범

죄자의 상당수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다른 가족에게 의존하는 해야 하는 삶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전과. 이들 대다수는 전과력을 지니고 있으며(78.4%), 동종전과의 빈도 역시 상당히 높다(45.9%). 최소 기소연령은 평균 24.62세(SD=11.687)이며, 최초 죄명 중 성범죄 관련 전과가 45.9%이며, 본 건 외 다수의 성범행시도(56.8%)을 살펴봐도 이 범죄자들이 성적으로 상당히 각성되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동납치성살해범과의 차이점이라면 이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각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성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범행의 조직화나 치밀함이 그리 높지 않다.

범죄자 특성. 범행 후 행동을 통한 이들의 특이점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응징적 엄포를 하나 이는 위협일 뿐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주의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범인의 얼굴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 피해자를 그냥 풀어준다거나 집 혹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혹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봐 다시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경우, 상당수가 성적파트너가 없으며(그림 12), 자발적 성경험도 없는 경우(그림 13)가 대부분이다. 13세미만아동성범죄자 중 상당수는 대인관계를 포함한 이성애를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이 다분히 합리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살인을 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애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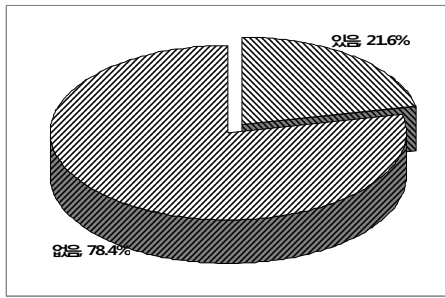


그림 12. 성적 파트너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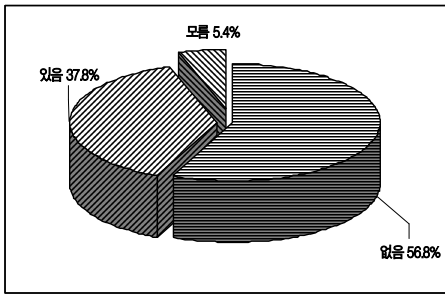


그림 13. 자발적 성경험 여부

의 반영이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엄밀히 말해, 통계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만 아동납치성살해범과 아동성범죄자(13세 미만성폭력범죄자) 두 집단의 이질성을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아동납치성살해범의 사례 수 부족으로 통계적인 차이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범행 및 범죄자의 특성을 비교해 봤을 때 두 집단의 다른 양상은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외국의 아동납치성살해범과 국내의 아동납치성살해범에게서 유사한 M.O.가 발견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국내의 아동납치성살해범과 아동성범죄자(13세미만성폭력범죄자)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아동납치성살해범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성범죄 중 우연 혹

은 사고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아동성범죄자들과는 다른 범주의 범죄도식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자의 독립적 장소의 확보 유무가 범행을 위한 중요한 상황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범죄 수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국내 아동납치성살해범에서 외국과 유사한 패턴이 발견, 13세 미만아동성범죄자에게서는 그들과 다른 특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피해자 선택이 무작위, 우연에 의한 조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대상자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들 대부분이 동일한 범죄자가 범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M.O.를 지닌다는 것은 수사 활용면에서 매우 중요한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아동실종과 관련된 최초 1~2 시간의 탐문 및 수사의 성패가 아동납치성살해 사건의 성패로 직결된다(<http://www.interpol.int/Public/Children/Missing/NationalLaws/mcUSA.asp>). 따라서 초기 범행수법의 유사성은 아동납치사건 수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즉,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에 적용한다면 납치 실종된 아동의 살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대체적으로 실종 시점부터 3시간 이내가 피해자 생존에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시점의 수색형태는 저인망식 수색형태⁸⁾를 띄어야 한다. 최근에는

아동 실종접수 즉시 납치실종전담팀 등이 바로 수사를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즉시 신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피해자가 범인의 은신처로 가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 사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생명을 잃은 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최초 실종자 수색 시 피해자 주거지 혹은 최종 목격 장소 주변은 물론 주택 및 건물 내부도 수색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빠짐없이 수색해야한다. 국내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아동납치성살해에서 중요한 상황적 요소가 범인의 독립된 장소였음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수색 시 건물내(주거지) 수색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수색범위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제안은 입법 후이나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위협에 처한 아동을 위해 국가적으로 입법과정에 노력을 기울인 외국의 경험(부록 1)을 참고하고, 또한 입법 전이라도 지역민의 동의 하에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개수사 시점의 단축이다. 현재 일반적인 공개시점은 빠르면 6시간 혹은 24시간 정도 후에 이루어진다. 선부른 공개수사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서이다. 하지만, 국·내외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특성에서 살펴봤듯이 아동납치성살해범죄에서의 살해는 범죄자의 범죄성향 때문에 살해하는 것이지 경찰의 공개수사가 피해자의 살해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전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닌 형사라도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특성(74%가 납치 3시간 이내 살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결하려는

8) 피해자 위치가 추정되는 모든 장소를 살살이 뒤져 수색한다는 의미에서 씀.

시도 자체가 시간적 적절성을 잃은 것이라는 것이 외국이나 국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범인이 자신의 은신처로 피해자를 아직 데려가지 못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실종 여부가 공개되어 범인을 압박하게 될 경우 범인은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빠른 신고와 이에 따른 실종 초기의 즉각적인 공개수사는 피해자의 생존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시민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이다. 앞서 말했듯이 빠른 시기의 실종자 발견은 범행을 차단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최근 아동 실종시의 수색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고 즉시 수사가 착수된다고 할지라도 일차 수색은 일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수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NCAVC산하 CASMIRC; 모건 p.하디만. 어린이 유괴 및 연쇄살인수사방책 센터)이나 영국(아동보호운영지휘부 및 민관 합동실종어린이 찾기; Missing Person System, MPS; Uk.missingkids.com), 캐나다(The Missing Children Society of Canada; MCSC)와 같은 외국에서는 국내는 물론 국가 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과 관련하여 민·관이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에도 아동범죄관련 교육은 물론, 아동 실종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모두 동참하여 범죄 차단에 일조하도록 지역 내 시민공동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본 주제와 별개로 발견된 13세미만아동성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을 첨가하자면, 이들은

9) Fight or Flight

피해 대상자의 선정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조우방법, 범행장소, 범행 후 행동 등)에서 아동 납치성살해범과는 달리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 평소 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각성상태에 있기는 하나 지능지체, 경계성 지능과 같은 지적 기능장애나 사회성 저하를 보이고 있어 아동납치성살해범과 비교했을 때 범행의 완속도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 성범죄가 더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13세미만아동성범죄 발생 시, 지능, 사회성 등의 정신적 평가를 필수적으로 하는 범죄자 정보수집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어렵고 애착적인 관계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위한 관리 감독과 정서적 지원, 사회적응 훈련 등 지역적 투자만으로도 상당수의 아동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특성을 살펴 그를 통한 수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작 경찰 내부 역할은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아동 실종, 아동 납치사건의 의미적 수사 주체를 논하고자 함에서이다. 실종 및 아동 납치 수사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와 문헌을 검토했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의 아동 실종 및 납치 관련 수사의 실체가 바로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실제적 수사는 FBI와 지역 경찰관들이 실시하지만, 아동 실종이나 납치와 관련된 사건에서만은 지역사회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 FBI나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다. 아동대상 범죄는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파렴치한으로 인식되고 발생빈도 역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러나 아동납치 실종사건 발생 시, 자녀유무를 떠나 불안 및

공포감의 사회적 파장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단 1명의 아이가 실종되더라도 사회는 긴장해야 하며 그 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납치상황발생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범인과 아동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시민은 구경하듯 경찰을 평가만 하고 언론은 경찰 비난성 보도에만 집중하고 있다. 즉, 경찰과 피해자 가족을 제외한 어느 누구하나 피해아동 찾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로는 아동납치 실종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이런 사건의 발생 시 경찰 등 사법기관의 전문적인 노력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실종자 수색과 연구노력은 민관의 구분없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나 사법기관은 물론 심리학과 사회학, 범죄학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실종 및 납치범죄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을 납치, 강간, 살해 후 검거된 범죄자와 친족간을 제외한 13세미만 아동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즉,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아 단순 미귀가자로 취급되거나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범행특성을 추출할 수 없는 사례 역시 제외되었다. 턱없이 부족한 사례로 아동납치성살해범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데는 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례 수가 확보될 때까지 이 연구를 늦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동이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는 반문과 잔인한 범죄의 증대성을 감안해 아동납

치성살해범죄의 사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는 아동 실종사건의 맥락에서, 아동실종 시 실종과 납치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변인추출을 통해 범인 검거는 물론 보다 정확한 수사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 실종사건 대비 범죄관련 실종 사건의 변별은 물론 그에 대한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 경찰 내 구조적인 대처방안 등 납치실종 수사에 관한 질적이고 제도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영, 김경옥, 정연대, 최대호 (2010). 범죄현장 행동에 근거한 연쇄 강간범죄자의 유형분류.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1(3), 171-183.
- 강은영 (2003).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경옥 (2009). 방화범죄자의 프로파일링을 위한 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200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형사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 이동진, 김성언. (2003). 납치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명희 (2007). 아동성폭력의 현황과 대책: 아동성폭력 피해의 유형 및 현황. 국회도서관보 337호.
- 정연대. (2009).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죄행동특성 분석. 제3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 성범죄 프로파일링-, 97-117.
- 정현옥 (2008).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신. (2007). 어린이 유괴범죄의 유형과 특징. *수사연구; 유괴·납치범죄의 실태와 수사*. 2007. 3. Vol. 281. 12-19.
- 최인섭. (1996).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발족 관련사항 (2008. 3. 30).
- Baumgartner, K., Ferrari, S., & Palermo, G. (2008). Constructing Bayesian Networks for criminal profiling from limited data. *Knowledge-Based System*, 21, 563-572.
- Bouvier, P. (1999). Typology and Correlates of Sexual Abuse in Children and Youth: Multivariate Analyses in a Prevalence Study in Geneva. *Child Abuse & Neglect*, Vol. 23 No. 8. 779-790.
- Canter, D. V., & Heritage, R. (1989).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Vol. 1.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 Conte, J. R. (1986). “A Look at Child Sexual Abuse. Chicago”: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Chicago: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 Finkelhor, D. (1994). Current information on the scope and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Vol. 4, No. 2, Summer-Autumn, Sexual Abuse of Children.
- Guidelines and curriculum for handling missing person and runaway cases. (2000). *The 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 State of California.
- Hall, R. C. W. & Hall, R.C.W. (2007) A Profile of Pedophilia: Definitio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Recidivism, Treatment Outcomes and Forensic Issue. *Mayo Clinic Proceeding*, 82(4), 457-471.
- Holmes, R. M. & Holmes, S. T. (1996) *Profiling Violent Crime: An investigative Tool*.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Holmes, R. M. & Holmes, S.T.(2002) *Profiling Violent Crimes: An investigative Tool*. Third Edition; Sage Publication.
- Kenneth A. H., Rober D. K., & Joseph G. W. (1997). *Case management for missing children homicide investigation*. Christine O. Gregorie attorney General of Washington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Kocsis, R. N., & Cooksey, R.W. (2002).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 of serial arson crim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6), 631-656.
- Kocsis, R. N., Irwin, H. J., & Hayes, A. F. (1998). Organised and disorganised behavior syndromes in arsonists: a validation study of a psychological profiling concept.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5, 117-130.
- Miron, M. S., & Goldstein, A. P. (1978). Hostage. Kalamazoo, MI: Behavior delia.June, D. L. (1999). "Introduction to executive protection ch.10."Kidnapping and Bombs.
- Mott Nicole, L. (1999). Serial murder-patterns in unsolved cases. *Homicide Studies*, Vol. 3, No. 3, 241-255.
- Nolan, M., O'flaherty, A., Turner, R., Keary, K., Fitzpatrick, C., & Carr, A. (2002). Profiles of Child Sexual Abuse Cases in Ireland: An Archiv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Vol. 26. Number 4, 333-348.
- Peterson, W. H., and Peterson, T. R. (1993). "Counting the Threat of Kidnapping." Risk Management, 57-63.
- Robert, F. J. (2004). *When your child is missing_Family survival guide*. Administer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ffice of Justice Programs U.S. Department of Justice, Third Edition, (NCJ 204958) .(Diamond, 1985:27-28).
- Stephen E. Steidel. (2006). *Missing and Abducted Children: A Law-Enforcement Guide to Case Investigation and Program Management*.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Third Edition.
- <http://www.mcsc.ca/>
- http://www.missingkids.com/missingkids/servlet/PublicHomeServlet?LanguageCountry=en_US
- <http://www.interpol.int/Public/Children/Missing/NationalLaws/mcUSA.asp>
- http://en.wikipedia.org/wiki/Child_Abduction_Serial_Murder_Investigative_Resources_Center
- http://maria_501.tripod.com/id39.html,
- <http://www.met.police.uk/links/services.htm>
- 1 차원고접수 : 2011. 2. 25.
심사통과접수 : 2011. 3. 9.
최종원고접수 : 2011. 3. 25.

Missing Investigation: M.O. Feature of Child-Kidnapping-Rape - Murderer on Internal and External

Sun young Go

Science Team of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Criminal Profiling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criminal behavior distinction Analysis in crime scene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 and this is useful high. But there is on children missing(or kidnapping) only victim, that is not useful. Fortunately, empirical study findings according to interview of offenders show that they similar/same M.O. feature per criminal as though they are same people do that. And that results are very useful in child-kidnapping-sexual assault murder investigation. For comparison on result of external cases, I examine internal child-kidnapping-sexual assault and murder cases. In order to make up for the mistake of hasty generalization due to lake of the cases, I search cases of molesting children under 13, pay attention that they have sexual motive for children. The result of internal child-kidnapping-sexual assault and murder cases were similar/same M.O. with pre, in, and post crime, as external cases. In short, most of crime victim is ordinary children and they(victim and criminal) met by chance on the street. Criminal get their victim using flirt with victim or ask for help. And right after kidnapping, they had binding and control victim using excessive assault, they are just children although not necessary control. And they kidnapped for main desires, sexual drive. But they killed victim by rational reason, differ from external murder caused by sex motive happened like a serial scenario. Post crime, most of body was dismembered and abandoned. Except survival victim fortunately, body finding point marked a watershed in internal child-kidnapping-sexual assault-murder investigation. And then criminal was arrested in about 3days. Otherwise offender of children under 13 differs from child-kidnapping-sexual assault-murderer. It's differ from encounter to post crime, except choice of victims. Through these findings, I can offer crime child missing(especially, sexual kidnapping) investigation outline. First, child missing/kidnapping investigation have to dragnet investigation in the early kidnapping through search cooperation a local resident. Second, police have to short the point of open, and finally it'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ncrease civil community. Incidentally, I offer crime prevention based on the cases of offender of children under 13. Department of Justice have to include the intelligence and social test, just in case of the offender of children under 13. And I can prevent children's sexual crime for support emotion and training for social adaptation of community. Basically, police investigative capacity need to increase objective and specialized through assistance from outside such as psychologist, sociologist and criminologist. But lots of the data about external missing, child kidnapping investigation emphasize that main agent is the local community include victim family. In conclusion, it's necessary to be mindful of join in local community in these investigation. Furthermore, I think that is in need of study for discrimination between just missing(run away from home, lose a way, etc.) and kidnapping, through the empirical data analysis.

Key words : child-kidnapping-sexual assault and murder, molesting children younger than 13, Modus Operandi(M.O.), Ordinary kids, dragnet investigation, Main agent of investigation in child kidnapping.

부 록

〈부록 1〉 위험에 처한 아동 조력을 위한 유의미한 미국 법령 제정

년 도	내 용
1932	Passage of Federal Kidnapping Act(연방 납치법안 통과)
1961	Adoption of Fugitive Felon Act subsequently amended 1970 to implement the Unlawful Flight to Avoid Service of Process
1968 ~ 1983	Adoption of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ct by all states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74	Passage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Passage of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1975	Institution of the NCIC Missing Person File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1980	Passage of the Parental Kidnapping Prevention Act
1982	Passage of the Missing Children Act
1983	Institution of the NCIN Unidentified Person File by the FBI
1984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Passage of the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
1988	United States become a signatory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Passage of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 Amendment of Subchapter III of 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to Create the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Youth
1990	Passage of the National Child Search Assistance Act
1993	Enactment of the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 Crime Act
1994	Passage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including the 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and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 and Child Safety Act
1997	Adoption of the 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2000	Passage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Enforcement Act known as Jennifer's Law
2003	Enactment of the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2006	Passage of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Stephen E. Steidel, 2006)